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사	행정주사보	1명	정년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조사	인권 관련 조사	행정주사보	○ 인권침해, 차별행위와 관련한 사건 조사 및 기타 인권 보호 업무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0. 1.) 기준]

임용예정직급 및 지원코드	직위별 요건	
행정주사보 조사	경력	①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외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경력)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이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 및 연구 분야의 경력"을 말함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0. 1. 예정)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개별 요건의 관련 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거나,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상기 사항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 등으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1호]**를 사용하여 증빙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는 필수 제출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 결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민경경력과 공무원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민간경력 1년'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다. 우대요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7.) 기준]

임용예정직급 및 지원코드	우대요건
행정주사보 조사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근무 연차별 차등 배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학과: 인권, 법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3)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배점) - 최근 5년 이내(2021. 1. 1.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4) 영어 능력 검정 점수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 관련 직무분야 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 및 연구 분야"를 말함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경력]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직무분야 근무 경력(공무원, 민간 경력 합산가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학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학과: 인권, 법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배점, 최대 5건)

- 최근 5년 이내(2021. 1. 1.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영어능력검정 점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관련 [별표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이상 소지자

- 2023. 9. 8.이후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7.)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통합채용포털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등록된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토플 (TOEFL)	토익 (TOEIC)	텡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통합채용포털의 사전등록 어학성적 조회 시 '유효기간'은 '사전등록 어학성적' 시스템상 기준(공채 적용)으로, 각 부처별 경채에서의 적용 기준과는 다를 수 있음

※ 통합채용포털에 미등록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 2024. 9. 8.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7.)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0. 1.) 기준으로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극심사*를 통해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심사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8. 28.(금) ~9. 7.(월)	'26. 9. 3.(목) ~ 9. 7.(월)	'26. 9. 22.(화)	'26. 10. 1.(목)	'26. 10. 23.(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 (<https://nhrc.go.kr>)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6. 9. 3.(목)~9. 7.(월), 09:00~18:00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방법: 등기우편 접수
 -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표기) / (문의전화: 02-2125-9717)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포함)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성과 기술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재직 기관 발급)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10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학위	○ 별지서식 제6호
	논문	○ 별지서식 제7호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기관 폐업 등 사유)	○ 별지서식 제11호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6. 10. 24.~11. 23.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6.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직급별 보수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참조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https://nhrc.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편의제공 신청 관련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02-2125-9717)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3.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및 별지 제1~11호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 3. 28.]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일: 2026. 10. 22.] 제33조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기술서(조사)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사	인권 관련 조사	행정주사보	1명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요 업무	○ 인권침해, 차별행위와 관련한 사건 조사 및 기타 인권 보호 업무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관계구축력, 긍정성,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혁신지향 ○ (직렬별 역량) 의사소통능력, 과업이해력, 분석력, 전문성 등
-------	---

필요 지식	○ 헌법, 국제인권법, 형사절차 관련법, 행정법 등 법령 관련 지식 ○ 인권의 보장과 관련된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와 지식 ○ 사건 조사에 관한 기법 ○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법
-------	---

응시 자격 요건	경력	① 관련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외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경력)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 관련 직무분야 경력 이라 함은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 및 연구 분야의 경력"을 말함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근무 연차별 차등 배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학위별 차등 배점) - 관련학과: 인권, 법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3)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배점) - 최근 5년 이내(2021. 1. 1.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활동 및 연구 분야 4) 영어 능력 검정 점수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또는 부착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수급자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관련 분야 경력을 최근 경력이 위에 오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3매 분량으로 작성
5. 직무성과 기술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1매 이내로 작성 - 관련 직무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주요업무 실적 등 작성

구 분	내 용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서류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 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으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11호)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회에게는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2021.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7.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 자필 서명 필수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원서 (원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행정주사보 조사	
응시자격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외국국적명 또는 해당없음 기재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또는 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행정주사보 조사	
응시자격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시험 당일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행정주사보 조사
 - ② 응시자격: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 중 선택
 -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첨부 또는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표시란: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 코드	조사	응시 자격 요건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20. 1. 1.~'24. 12. 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1. 5. 1.~'22. 3. 1. (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21. 1. 1.~'24. 12. 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2. 5. 1.~'23. 1. 1. (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인권법	'00.00.00		인권법학 석사			
논 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월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 우대요건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 경력만 작성

4. 학위 보유 현황

학 위	학교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인권법	'00. 00. 00.	인권법학 석사

※ 학력은 시험위원 구성 시 응시자와 학연 관계 등 제척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 외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성과 등을 작성할 때에는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지원코드: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2.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3.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 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학위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사 이상)

※ 관련학과: 인권, 법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어학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어학성적표 상 내용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행정주사보 조사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행정주사보 조사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분량으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작성
-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과 활용계획
- 해당분야 이해도
- 채용예정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업무 추진 전략 등 작성

직무성과 기술서

1. 근무처(부서명) (예시: 000공사)

○ 업무실적 등 주요내용(소제목)

【작성요령】

주요업무 실적내용을 근무처(부서)별로 각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근무처(부서)가 많은 경우에는「1」,「2」... 등의 순으로 5개까지 기재

2. 근무처(부서명) (예시: 000기관)

○ 업무실적 등 주요내용(소제목)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지원코드	응시직급
		조사	행정주사보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석사 및 박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연구논문 요약서

성명	지원코드	응시직급
	조사	행정주사보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SCI ☐ SSCI ☐ A&HCI ▪ 등재구분("√" 표기) :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u> <u>출입국·외국인청</u> <u>(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u> <u>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u> <u>보유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u> <u>응시요건 충족 및</u> <u>제출서류 진위여부</u> <u>확인</u> 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국가인권위원회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무원 채용(임용)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2026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②	비고 ③								
		부터 (년월일)	까지 (년월일)												
			'19. 7. 1.	'24. 12. 31.	사원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주 00시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tr><td colspan="2">발급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행정업무 수행, ○○조사 업무 수행, ○○정책 업무 수행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주40시간) ③ 비고															